
(1) 프리팁스(Pre-TIPS)

※ 본 공고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유치를 받은 후 추천받은 창업기업이 대상이므로 일반기업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

사업개요

- 사업목적** :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(Seed)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(TIPS) 창업기업으로 육성
- * 전체 지원규모를 지방소재 창업기업(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)으로 선발하여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내 우수 기술창업 인재를 발굴

- 지원대상** :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총 5천만원 이상 투자 및 추천한 비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 소재 초기창업기업
- * 신청자격은 동 공고 '2. 신청자격 및 요건' 참조
- **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 인정기준은 [참고4] 투자 인정기준 참고

- 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(평균 91백만원)
- * 사업화자금(정부지원사업비)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

< 지원 내용 >

지원기간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
		현금	현물
8개월	최대 1억원 (총 사업비의 70% 이하)	총 사업비의 30% 이상	
		10% 이상	20% 이하

- 협약기간** :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

- 선정규모** : 50개사 내외

* 총 2회 모집 예정이며, 대·내외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

2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, 제2조제3호,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중, 아래의 **요건①~③**을 **모두 충족**하는 기업

< 신청 세부 조건 >

▶ 신청가능 업력 : 2022년 5월 9일 ~ 2025년 5월 8일

- **개인사업자**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**법인사업자**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
 - * 개인·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·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(**참고 11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필히 확인**)
 - 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-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서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

- **요건①** :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총 5천만원 이상 투자 및 추천한 기업

* 투자 약속한 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사업 선정 시,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(주금납입·등기)가 완료되어야 함

-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기관이 총 5천만원 이상 공동투자 후,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천한 기업도 신청 가능

< 협력기관의 종류 >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창업기획자(중소벤처기업부 등록) |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(LLC 등 포함) |
| ③ 기업형(중소·벤처기업 및 중견·대기업 등) | ④ 글로벌 투자·보육 전문기관* |
| ⑤ 기타(기술지주사,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) | |

*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(지사 등)이 있으며, 국내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 한하여 인정

- **요건②** : 본사 또는 공장이 비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 소재 기업
 - * 협약기간 동안 해당 소재지에 잔류 해야하며,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명서로 소재지 사실 확인 예정
- **요건③** :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
 - * 모집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
 - ** 협약체결일 기준 근로자 2인 미만인 경우 협약 이후에도 제재될 수 있음

□ **신청 제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**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(기업)

< ③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
2.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
3.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(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)

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(기업) ([참고 2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
⑤ 중소벤처기업부 '팁스 R&D' 또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*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(기업)

※ 중단 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* 단, 공고사업과 '동일연도'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(계속 사업을 '25년에 협약한 경우 참여 불가)

* 「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6호)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([참고3] 참조)

⑥ **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(기업)**

⑦ **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 (기업)**

⑧ **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 (기업)**

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
⑨ **2025년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**

⑩ **신청·접수마감일 기준 중소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 (기업)**

⑪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(기업)

⑫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⑬ **기타 중소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(기업)**

□ 의무 및 역할

○ 선정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
*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

○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
○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
○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(현금)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창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
-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고,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3

지원내용

□ **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(평균 91백만원)

구분	지원 세부 내용														
사업화 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제품 제작, 지적권 취득, 사업모델 (BM)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 (평균 91백만원) 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(정부지원사업비) 차등 지원 ** 사업화 자금 (정부지원사업비)은 신청자(기업)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• 총 사업비 = 정부지원사업비 70% 이하 + 자기부담사업비* 30% 이상 * 자기부담사업비 (30% 이상) : 현금 10% 이상 + 현물 20% 이하 *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														
	<p>< 총 사업비 구성 및 예시 (정부지원사업비 7천만원인 경우) ></p>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총 사업비</th> <th rowspan="2">정부지원사업비</th> <th colspan="2">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</th> </tr> <tr> <th>현금</th> <th>현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사업비의 70% 이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사업비의 10%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사업비의 20% 이하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억원 (100%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,000만원 (70%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00만원 (10%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000만원 (20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총 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현금	현물	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10% 이상	총사업비의 20% 이하	1억원 (100%)	7,000만원 (70%)	1,000만원 (10%)	2,000만원 (20%)
	총 사업비		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								
현금		현물													
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10% 이상	총사업비의 20% 이하												
1억원 (100%)	7,000만원 (70%)	1,000만원 (10%)	2,000만원 (20%)												

4

접수방법

□ 접수 기간

- 1차 : 2025. 5. 8.(목) ~ 5. 27.(화), 16:00까지
- 2차 : 2025. 8. 1.(금) ~ 8. 20.(수), 16:00까지

* 신청·접수 현황 등 대·내외 상황에 따라 접수 일정 및 횟수 등이 변동될 수 있음

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 - * 신청·접수는 **16:00 정각에 종료** (신규 신청 불가). 다만, 16:00 전에 1단계(약관동의)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, 18:00까지 작성 항목 수정,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
-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**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**됨
- ③ **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**하고, 접수된(18:00이후)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**수정 및 삭제 불가**

□ 접수방법

-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 (www.k-startup.go.kr)
 -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**실명인증** 및 ② **기업 인증**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**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**
 - *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 - ** **기업인증** :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
 - ***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'[붙임 5] 사업 신청 매뉴얼' 참고

< 유의 사항 >

- ① **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**해야 하며,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**탈락 처리**
- ② K-Startup 누리집 **신규 가입 시**,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**본인 인증 필수**. **서울신용평가정보(SCI)에 실명(개명)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** K-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

□ 제출서류

○ 사업계획서 1부

- [붙임 1] 양식 활용하고,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○ 기타 제출서류 각 1부

< 제출서류 목록 >

제출서류	제출방법	비고
① (양식1) 사업계획서	PDF 파일 첨부	<p>온라인시스템(K-startup) 업로드</p> <p>※사업계획서 외 다른 서류는 '회사명.zip'으로 압축 후 제출</p> <p>* 제출서류의 용량 합계는 최대 30MB 초과 불가</p>
② (양식2) 신청 기본사항	온라인 입력	
③ (양식3) 참가신청서		
④ (양식4) 개인정보 제공·이용·수집동의		
⑤ 투자계약서·투자금 납입내역	PDF 파일 첨부	
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	
⑦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확인서		
⑧ 투자사실확인서		
⑨ 청렴서약서		
⑩ 주주명부		
⑪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		
⑫ 비수도권 소재 협약서		
⑬ 사실증명 (총사업자등록내역)	PDF 파일 첨부	
⑭ 사업자등록증명원 (신청기업 외 다른 '계속'사업자 보유 시)		
⑮ 휴·폐업사업사실증명원 (‘휴·폐업’사업자 보유 시)		
⑯ 기타 가점 및 성과 관련 증빙서류 등	PDF 파일 첨부 (가점 등* 해당시)	

* 가점 증빙서류는 **사업 신청 시 제출**하며,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

**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기존에 발급받은 '창업기업 확인서' 보유 시 해당 서류로 확인 대체 가능(단, 모집공고일 기준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야 함)

5

평가 및 선정

□ **평가 절차** : 신청기업 요건·투자 검토,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

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창업진흥원에서 별도 안내 예정

<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(안) >

① 신청·접수	② 요건·투자 검토	③ 발표평가	④ 최종 선정
창업기업이 K-startup에서 사업 신청	요건 및 투자 적절성 검토 후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	창경센터·창업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 (30분 이내)	정부지원사업비 등 선정 확정
(1차) '25.5.8~5.27	'25.6월 중	'25.6월 말	'25.7월 초
(2차) '25.8.1~8.20	'25.8월 말	'25.9월 초	'25.9월 중

신청자(기업)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에서 상시 진행하며,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·협약 취소 처리 예정

* 대·내외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

□ 평가 방법

① **요건·투자 검토**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, 가점 등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확인 후, 투자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 적절성 검토

② **발표평가** : 제품·서비스 개발 동기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(가점 포함)

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(동 사업 신청자)와 추천한 창조경제 혁신센터 담당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

* 평가시간 : 40분 이내 (발표 20분 내외 + 질의응답 20분 내외)

** 평가방법 :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석자가 추천 사유 설명 및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

③ **최종선정** :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

* 선정평가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 최종선정 대상자의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 >

※ 최종 선정 통보된 기업은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 요청*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(마지막 날 17시까지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「2025년 프리팁스」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

※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의 선정 절차 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'제외'됩니다.

※ 단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에 이미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이 가능합니다.

※ 제출한 '협약체결확약서'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-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「2025년 프리팁스」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

* 확약서 안내·교육(발표평가 대상자) → 확약서 배포(선정 예정자) → 확약서 수취

** 기간 내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(후보자)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

-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, 창업기업별 정부 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

*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**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

-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
□ 평가지표

- 창업 아이템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< 발표평가 지표 주요내용 >

평가항목	세부 내용
문제인식	• 창업아이템 개발/개선 동기(문제인식), 목표시장 분석 등
실현가능성	• 창업아이템 개발/개선 방안, 고객요구 대응, 차별화 방안 등
성장전략	• 창업아이템 사업화 방안, 추진계획, 자금 조달계획 등
팀(기업) 구성	•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(예정인)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

-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기업,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도입·운영 기업 등에서 각 1점씩, 최대 2점의 발표평가 가점 부여

< 가점 항목 및 점수 >

가점 항목	점수	비고
1)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[붙임3 참조]	1점	최대
2)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도입·운영	1점	2점

□ 사업 운영일정

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